

「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」
일부개정안

2014. 12.

국 토 교 통 부
(건설안전과)

1. 개정이유

「건설기술관리법」이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기존에 구분되어있던 감리와 CM이 건설사업관리로 통합됨에 따라 법령 인용 조문 및 관련 용어를 수정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전부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 인용 조문을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으로 수정하고, “감리자” 용어를 “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”로 수정
- 「도로법」 전부개정(“14.1.14)에 따라 근거 법령 인용 조문 수정

3. 주요 토의과제 : 없 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별첨자료 참고)

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일부개정안

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감리자”를 “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”로, “도로법 제59조”를 “도로법 제77조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건설기술관리법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2조제5호에”를 “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조제6호에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도로법 제8조”를 “도로법 제10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